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



**1. 연구책임자 교수 적극적 관여 없었던 상황에서 구체적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1) 연구책임자 교수 주장요지 -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 자체는 인정
하나, 학생연구원들은 지급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였을 뿐, 연구책임자 교수는 이를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a)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 8773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등 참조)

(b) 연구책임자 교수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공동관리 사실을 적어도 개괄적 추상적으로나마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귀속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연구책임자로서 그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라는 법위반행위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공동관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공동관리가 종래 연구실의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판결요지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상 명백히 금지되는 행위로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당사자로서 합의한 이 사건 각 과제 협약서에도 "인건비는 공동관리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제4조 제2항

단서). 종래 과거에는 연구실 운영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연구비 공동관리 방식이 널리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그 오남용으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가 본래 용도가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학생연구원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 및 규정상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자체를 금지하게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더 이상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비 관리행태가 아니다.

3. 공동관리금액을 재분배하여 다시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전액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판결요지 -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학생연구원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학생연구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학생인건비가 그들을 떠나 공동관리되는 순간 그 자체로 사용용도 외 사용 상태에 놓인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인건비로서의 특정성이 상실된 공동자금에서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용도에 맞는 사용이 될 수는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78391 판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